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Executive Officer under Korean Commercial Code

권 상 로
조선대학교

Kwon sang-ro
Chosun University

요약

현행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의 설치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대회사들이 집행임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집행임원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임원의 설치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에 대하여 감사의 조사보고의무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입법의 미비이며 집행임원이 작성한 서류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지 그리고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 여부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조사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어야 한다.

Ⅰ. 서론

2011년에 집행임원제도가 입법화되면서 이사회에 속하였던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이 분리되어 업무집행기능은 집행임원이 수행하며 이사회는 감독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1]. 그러나 경제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위원회 설치회사에 대하여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아 입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현행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의 규모에 따라 업무집행기관과 업무감독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즉 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상장회사 중에서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집행임원이며 업무감독기관은 이사회이다. 그리고 집행임원을 설치하지 않은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업무집행기관이며 동시에 업무감독기관이다. ②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 중에서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집행임원이며 업무감독기관은 이사회이다. 집행임원을 설치하지 않은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업무집행기관이며 동시에 업무감독기관이다. ③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이사가 업무집행기관이 되며(상법 제383조 제1항 본문) 업무감독기관은 주주총회이다(상법 제383조 제4항).

1. 집행임원의 의의

집행임원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도 입법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세 나라는 집행임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집행임원의 개념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집행임원이란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을 말한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2. 집행임원의 선임 및 종임

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다.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되며(상법 제408조의2 제3항). 집행임원은 임기만료에 의하여 종임한다[3].

3. 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은 업무집행권과 회사대표권을 가진다. 즉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과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등의 업무집행권한을 가지며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4][5].

4. 집행임원의 의무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집행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08조의6 제1항). 이외에도 집행임원은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정관 등의 비치·공시의무 등을 지게 된다[6].

5. 집행임원의 책임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08조의8 제1항).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08조의8 제2항)[7].

Ⅲ. 결론

현행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의 설치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대회사들이 집행임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집행임원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임원의 설치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에 대하여 감사의 조사·보고의무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입법의 미비이며 집행임원이 작성한 서류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지 그리고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 여부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조사·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8.
[2] 이진효,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기업 연구, 제6권 제2호, pp.139-172, 2016.
[3] 손진화, 상법강의, 신조사, 2017.
[4] 박정구, “상법개정안상 집행임원제도 도입의무화에 대한 소고”, 강원법학, 제4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pp.511-545, 2014.
[5] 원용수, “프랑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 대표이사 및 집행임원의 지위와 권한 배분에 대한 고찰”, 서울법학, 제25권 제2호, pp.307-364, 2017.
[6] 권종호, “2011년 개정상법상의 집행임원제도의 의의와 과제”, 증권법연구, 제12권 제2호, pp.1-34, 2011.
[7] 남유선, “개정상법 및 시행령상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6권 제1호, pp,47-78.